



식품등의 표시제도 자문협의체 운영 규정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의 표시제도에 관한 자문협의체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편집자 주 -

1. 제정이유

식품등(농·임·축·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의 표시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사항 및 주요현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협회 등)로부터 의견 수렴 및 자문을 받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표시제도에 관한 자문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등의 표시제도에 관한 자문협의체 운영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1) 식품 관련 표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자문 과정이 필요함

2)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자문을 받기 위하여 식품관련 표시제도 자문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자문협의체를 통하여 합리적인 표시기준 개정 및 상호 협력을 통한 표시기준 마련으로 소비자, 기업의 불만 해소 기대

나. 식품등의 표시제도에 관한 자문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위원 구성, 회의, 관계자의 의견청취 등)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14조)

1) 자문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함

2) 자문협의체 위원 구성, 위원장직무, 회의소집, 관계자의 의견청취, 회의록 작성, 비밀유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자문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방식으로 협의체 운영 및 관리가 되도록 함



「식품등의 표시제도에 관한 자문협의체 운영 규정」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등(농·임·축·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의 표시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사항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표시제도 개선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표시제도에 관한 자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협의 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주요 현안 표시 내용에 관한 사항
2. 이해관계자 간 또는 개선요구자 간 이해가 상충되는 식품등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식품안전정책국장으로 한다. 단,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에 관한 논의사항은 식품영양안전국장, 축산물표시에 관한 논의사항은 농축수산물안전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 시 마다 제4조에 따른 후보단 중 논의 주제 관련자 20명을 선택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20명의 인원 구성비는 소비자단체 40%, 업계 및 협회 40%, 기타 관련자 20%로 한다.

제4조(협의체 위원 후보단 구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 표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120명 이내의 협의체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을 위촉한다.

1. 정부기관 및 정부 출연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2. 식품등 관련 협회에 소속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교수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소속된 자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용기·포장지 제조업, 용기류제조업, 식품등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판매업에서 근무하는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4조에 따른 후보단 구성 위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들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제3조에 따른 구성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의 협의체 위원 후보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자로서 논의 주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장은 협의체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표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① 협의체 운영에 참여한 위원과 관계자는 논의한 주제 및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과 관계자는 비밀서약서에 서명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경비 지출)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